

# 꿀벌 통계조사 어떤 법령에 의하는가?

## 가축통계조사규칙

(1977. 1. 20 농수산부령제666호, 1996. 12. 28 농림부령제 1246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 통계에 관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조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통계조사를 말한다.  
2. "표본조사"라 함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조사기구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통계조사를 말한다.

### 제3조(조사사항)

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조사 :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꿩, 꿀벌  
2. 표본조사 : 한우, 젓소, 고기소, 돼지, 닭

### 제4조(조사대상)

조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조사시기)

①행정조사는 매년 12월1일 현재로, 표본조사는 매년 3월31일·6월30일·9월30일과 12월1일 현재로 각각 실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다른 통계와의 관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조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조사방법)

조사는 타계식 면접 청취조사방법에 의한다.

### 제7조(조사표)

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한다.

### 제8조(조사업무의 관장)

행정조사업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고, 표본조사업무는 농업통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제9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읍·면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행정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사무소장은 농림부장관의, 농업통계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표본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10조(조사지도원)

①농림부장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본조사업무를 지도할 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②도지사와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조사업무를 지도할 지도원을 지명한다.

### 제11조(조사원)

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조사업무를 담당할 조사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훈련)

①농림부장관은 농업통계사무소 및 농업통계사무소출장소에 근무하는 농업통계조사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도지사는 행정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원과 조사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제13조(조사불능의 조치)

①도지사 및 사무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일안에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제14조(보고)

집계가 완료된 때에는 행정조사에 있어서는 읍·면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표본조사에 있어서는 출장소장은 사무소장에게, 사무소장은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사결과 확인등)

①도지사·구청장 및 군수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조사·보고한 행정조사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출장소장이 조사·보고한 표본조사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지도원으로 하여금 도지사 또는 사무소장이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조사결과의 공표)

도지사·구청장·시장·군수·읍·면장·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농림부장관이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 후가 아니면 그 관할구역안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조사결과 관계서류의 보존)

①조사표는 2년간 보존한다.  
②집계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조사결과 보고서 및 공표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 피투(P<sub>2</sub>) 신제품 생산판매

하절기 새로운 제조기술에 의해 생산된 P<sub>2</sub> 신제품은 금년봄 생산된 일부 제품의 단점을 완벽한 실험하에 보완시킴으로서 가시응애 및 꿀벌진드기를 100%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제품입니다. 가시응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봉군은 P<sub>2</sub>스트립의 교환시기를 10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처리하십시오

- 특 ① 탁월한 효과와 저렴한 가격
- ② 편리한 사용법
- ③ 소상 전면에 부착하므로 소비 취급에 편리
- 징 ④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방제효과 지속
- ⑤ 꿀벌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

가시응애 및 꿀벌진드기의 시작과 마지막 구제시기인 2월부터 11월은 금년과 내년도까지 양봉사업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가시응애 피해, P<sub>2</sub>로 해방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품 제조원

(주) 대성미생물연구소  
(주) 한 동  
(주) 중앙케미칼

판매원(전국총판) ... 한국 유일의 봉기구 전문 생산업체

# 고려양봉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16  
☎ 053-424-8252 · 5040, FAX 053-425-1310

은행 온라인구좌번호  
(예금주:고상인)  
● 농협 703-01-004324  
● 우체국 700039-0106059  
● 국민은행 601-01-0018-266